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
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 확대(안 제8조)

- 현행 :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(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,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포함)

- 개정 :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(대형유통기업 대표 3명,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포함)

○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 범위 명확화(안 제9조)

○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 신설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